

수원고등법원 2023. 2. 17 선고 2021나225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3. 2. 17 선고 2021나2252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17가합1284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덕

피고, 피항소인1. 망 F의 소송수계인 G

2. 피고 겸 망 F의 소송수계인 H

3. 피고 겸 망 F의 소송수계인 I

피고 1,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4. J

5. K

피고 4,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담

담당변호사 조일원

변론 종결 2023. 1. 27.

판결 선고 2023. 2. 17.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17가합12847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상속지분 확인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겸 망 F의 소송수계인 H은 별지 목록(부동산)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 B, C에게 각 1/15 지분에 관하여, P(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1/55 지분에 관하여, 원고 D, E 및 W(주민등록번호 2 생략), X(주민등록번호 3 생략)에게 각 2/165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겸 망 F의 소송수계인 I, 피고 J, K은 각 별지 목록(부동산)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 B, C에게 각 1/30 지분에 관하여, 위 P에게 1/1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D, E 및 위 W, X에게 각 1/165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J은 별지 목록(부동산)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 B, C에게 각 1/6 지분에 관하여, 위 P에게 1/22 지분에 관하여, 원고 D, E 및 위 W, X에게 각 1/33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 원고들의 피고 망 F의 소송수계인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망 F의 소송수계인 G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겸 망 F의 소송수계인 H, I, 피고 J, K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겸 망 F의 소송수계인 H, I, 피고 J, K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의 가., 나., 다.항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 망 F의 소송수계인1) G2), 피고 겸 망 F의 소송수계인3) H, I, 피고 J, K은 원고들에게 각 별지 '금전청구내역'의 원고 및 피고별 '유류분 청구'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22. 12.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4)

2. 항소취지

가. 원고들5)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① 피고 H은, 원고 A, B, C에게 각 별지 목록(부동산) 순번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381/100,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D, E에게 각 별지 목록(부동산) 순번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78/100,00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자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I은, 원고 A, B, C에게 각 별지 목록(부동산) 순번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000/100,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D, E에게 각 별지 목록(부동산) 순번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09/100,00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자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③ 피고 K, J은, 원고 A, B, C에게 각 별지 목록(부동산) 순번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046/100,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D, E에게 각 별지 목록(부동산) 순번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35/100,00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자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④ 피고 J은, 원고 A, B, C에게 각 별지 목록(부동산) 순번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474/100,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D, E에게 각 별지 목록(부동산) 순번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359/100,00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자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⑤ 별지 목록(부동산) 순번 제6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예금채권) 기재 각 채권에 관한 상속지분은 원고 A, B, C이 각 18,474/100,000, 원고 D, E이 각 3,359/100,000, 피고 G가 7,918/100,000, 피고 H, I이 각 5,278/100,000, 피고 K, J이 각 3,815/100,000임을 확인한다. 제1 예비적으로, ① 별지 목록(부동산) 순번 제6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예금채권) 기재 각 채권에 관한 상속지분은 원고 A, B, C이 각 23,374/100,000, 원고 D, E이 각 4,249/100,000, 피고 G가 2,790/100,000, 피고 H, I이 각 1,859/100,000임을 확인하고, ② 피고 G는 원고 A, B, C에게 각 7,383,501원, 원고 D, E에게 각 1,342,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③ 피고 H은 원고 A, B, C에게 각 32,340,555원, 원고 D, E에게 각 5,88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④ 피고 I은 원고 A, B, C에게 각 32,340,555원, 원고 D, E에게 각 5,88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⑤ 피고 K은 원고 A, B, C에게 각 33,476,092원, 원고 D, E에게 각 6,086,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⑥ 피고 J은 원고 A, B, C에게 각 49,169,992원, 원고 D, E에게 각 8,939,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으로, ① 별지 목록(부동산) 순번 제6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예금채권) 기재 채권에 관한 상속지분은 원고 A, B, C이 각 1/4, 원고 D, E이 각 2/44임을 확인하고, ② 피고 G는 원고 A, B, C에게 각 30,884,901원, 원고 D, E에게 각 5,615,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③ 피고 H은 원고 A, B, C에게 각 20,589,934원, 원고 D, E에게 각 3,743,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④ 피고 I은 원고 A, B, C에게 각 20,589,934원, 원고 D, E에게 각 3,743,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⑤ 피고 K은 원고 A, B, C에게 각 33,476,092원, 원고 D, E에게 각 6,086,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⑥ 피고 J은 원고 A, B, C에게 각 49,169,992원, 원고 D, E에게 각 8,939,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 예비적으로, ① 별지 목록(부동산) 순번 제6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예금채권) 기재 채권에 관한 상속지분은 원고 A, B, C이 각 24,694/100,000, 원고 D, E이 각 4,489/100,000, 피고 G가 526/100,000, 피고 H, I이 각 351/100,000임을 확인하고, ② 피고 G는 원고 A에게

6,687,194원, 원고 B에게 240,415원, 원고 C에게 3,425,401원, 원고 D, E에게 각 62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③ 피고 H은 원고 A에게 4,458,130원, 원고 B에게 160,277원, 원고 C에게 2,283,600원, 원고 D, E에게 각 41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④ 피고 I은 원고 A에게 4,458,130원, 원고 B에게 160,277원, 원고 C에게 2,283,600원, 원고 D, E에게 각 41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⑤ 피고 K은 원고 A에게 26,095,399원, 원고 B에게 6,239,792원, 원고 C에게 4,580,063원, 원고 D, E에게 각 832,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⑥ 피고 J은 원고 A에게 37,532,440원, 원고 B에게 9,238,631원, 원고 C에게 6,850,005원, 원고 D, E에게 각 1,245,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J, K

제1심판결 중 피고 J, K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J, K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의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

1) 망 L(AP생)6) 은 2016. 9. 1. 사망하였는데, 자녀로는 망 N, 망 F, 원고 A, B, C, 망 O이 있다.7) 2) 망 O은 망인 사망 전인 1989. 3. 9.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Q, 자녀인 피고 J, K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Q은 망인 사망 전인 1996년경 다른 남성과 재혼하였다.

3) 망 N은 망인 사망 전인 2013. 12. 31.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P, 자녀인 원고 D, E 및 W, X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4) 망 F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10. 17.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G, 자녀인 피고 H, I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이에 피고 G, H, I이 망 F의 당사자 지위를 수계하였다.

나. 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 2012. 5. 16. 별지 목록(부동산)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J 앞으로 2012. 5.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2012. 7. 23. 별지 목록(부동산)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F, 피고 H, I, J, K 앞으로 각 1/5 지분씩 2012. 7. 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8)

다. 망 F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1) 피고 G, H, I은 2020. 4. 20. 별지 목록(부동산)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F의 지분(1/5 지분)을 피고 H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다만, 망 F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예금채권) 기재 각 채권과 망 F의 채무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2) 피고 H은 2020. 4. 28. 별지 목록(부동산)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F 지분인 1/5 지분에 관하여 2019. 10. 17.자 상속재산합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위 각 부동산 중 피고 H의 지분은 2/5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9))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피고 H, I, J, K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별지 목록(부동산)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는 망인이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H, I, J, K은 원고들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각 보유 지분 중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상당한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들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들로 하여금 P, W, X에게 그들의 상속분에 상당한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

나. 주된 쟁점(이 사건 각 증여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한다.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8, 12, 13, 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망인은 2006년경 교통사고로 두개골 골절상(Skull Fracture - TA)을 입은 이후로 간간이 구음장애(dysarthria), 방향감각 상실(disorientation) 등의 증상을 겪어오다가 2011. 8. 3. 21:00경 어지럼증(dizziness)을 호소하여 T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그 후 망인은 왼쪽 편마비, 구음장애, 현훈 증상으로 U병원에서 2011. 9. 11.부터 2011. 9. 2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때 2011. 9. 16. GDS10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서 3단계(경미한 인지장애, 분명한 장애를 보이는 가장 초기 단계)로 판정되었다¹¹⁾

나) 망인은 2011. 9. 23. T병원으로 전원하여 2011. 10. 6.까지 중풍뇌질환센터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료기록¹²⁾에 의하면 망인이 혼자서는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백내장 수술 이력으로 양안의 시력차가 심하여 좌측에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하며, 낮잠이 많아 하루에 15시간 이상 잠을 자야 피곤을 느끼지 않는 상태였다.

다) 망인은 T병원에서 2011. 10. 1. 의사 AQ이 실시한 MMSE-K 검사¹³⁾에서 치매에 해당하는 19점(만점: 30점)을 받았다¹⁴⁾

라) 망인에 대한 T병원 2011. 10. 14.자 진료기록¹⁵⁾에는 망인의 상태에 관하여 '최근 일 기억

못하신다. 따님 집에 오신 지 1주일가량 되었는데 화장실이 어딘지..를 잘 모른다. 수개월전 (뇌경색 생기기 전) 집을 못 찾았다. 딸에게 전화해서 돌아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T병원은 2011. 11. 10. 망인에 대하여 노인신경심리평가(SNSB)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K-MMSE 21점(30점 만점), CDR16㉒단계(총점 10점), GDS 5단계17) Barthel ADL18) 3점(20점 만점), I-ADL19) 1.67(10/6)점, CGA-NPI20) 7점으로 평가되었고, 판독의사 AR은 이를 기초로 망인의 상태를 '언어적 기억력은 정보 등록과정에서부터 현저한 장애가 시사되며, 시각적 기억력 또한 정상범주 이하로 저하되어 있어 보임. 주의집중능력 중 지속적 주의집중능력이 보통수준에 매우 못 미치고 있고, 언어능력 중 confrontational naming ability21)가 정상범주 이하로 저하되어 있음. 시각적 지각, 분석 및 구성능력과 전두엽/집행기능이 정상범주 이하로 매우 저하되어 있음.

정서적으로 중증도 우울감이 시사됨. 이상의 신경심리학적 평가결과를 종합해 볼 때, bilateral temporal frontal lobes22)의 기능장애와 bilateral parietal lobes23)의 기능저하가 시사됨'이라고 판정하였다24)

바) 망인은 2012. 3. 25.부터 U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2. 3. 29.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퇴원하였는데, 이때 망인의 보호자로 피고 G가 '나는 위 환자의 질환에 대하여 검사나 치료를 요하는 줄 알지만 사정에 의하여 퇴원합니다. 따라서 차후에 일어나는 환자의 질병에 대하여서는 서명자 자신이 책임지겠습니다.'라고 기재된 서류25)에 서명하였다. 당시 주치의는 위 문서에 자필로 "뇌경색 의심, 치료 × →"라고 기재하며 망인의 상태를 설명하였고, '환자 이외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사유' 중 '환자의 신체·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 항목에 선택표시가 되어 있다.

사) 망인은 2012. 8. 20. U병원에서 실시한 GDS 검사에서 5단계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 판정을 받았고, K-MMSE 검사에서 19점(만점: 30점)을 받았다. 이때 K-MMSE 검사에서 시간 관련 지남력, 주의집중 및 계산력, 기억회상력 부분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보였다26)

아)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5년 9월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AS에 있는 망인 자택에서 원고 A, B, C과 원고 C 남편 AT, 피고 J, K이 만나 이 사건 각 증여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대화27)를 나누었다. 이때 AT과 원고 C이 피고 J, K에게 별지 목록(부동산)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들 상속분 상당을 원고들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물었고, 이에 피고 J, K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상 하자가 있다는 점과 과거에 이를 이유로 원고들 앞으로 위 각 부동산의 일부분이나 지분을 이전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자) 2015. 9. 28.경 화성시에 있는 피고 G의 집에서 원고 A, B, C과 원고 A의 남편 AU, AT, 피고 G, H, J, K이 모여 같은 문제에 관하여 대화28를 나누었는데, 이때 피고 G, H은 "피고 J으로부터 '별지 목록(부동산)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3: 2(망 F과 그 자녀들인 피고 H, I 앞으로 3/5 지분을, 망 O의 자녀인 피고 J, K 앞으로 2/5 지분을 이전한다는 뜻으로 보인다)로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 J에게 증여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해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J, K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 G, J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다른 상속 부동산, 즉, 별지 목록(부동산) 제6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전답)을 모두 원고들에게 이전하는 취지의 합의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차) 피고 J은 2015. 10. 20. 자필로 작성한 사과문29에 "(전략) 할아버지 소유의 AV 선산30에 대한 등기를 둘째 큰아버지31) H형, I형, K 누나, 저 이렇게 다섯 사람의 이름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할아버지께 이 산은 저와 둘째 아버지 몫으로 줄거라는 얘기도 들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거란 생각으로 했지만, 당시 할아버지가 치매가 있으셨던 상황에서 첫째 큰아버지와 고모들과는 상의 없이 등기 이전을 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며 (후략)"라고 기재하였다.

카) 2016년 1월경 피고 G의 집에서 원고 A, B, C과 AU, AT, 피고 G, H이 만나서 같은 문제에 관하여 이어서 대화32하였는데, 이때 피고 H은 '별지 목록(부동산)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J이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책임을 지기로 하여 주도한 것이므로, 피고 J이 책임지고 원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당시 해결책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부동산)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부를 다시 증여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피고 G는 '이 사건 증여 당시 망 F, 피고 H, I이 증여세를 약 6,500만 원 납부하였는데, 그 부담이 너무 컸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대신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원인무효소송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하면서, 아울러 피고 J,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부동산)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H은 '피고 J의 책임 아래 피고 G, H, I이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 또는 보전받기만 하면, 이 사건 각 증여 부동산을 원상회복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원고 D은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날 모임에서 피고 G는 다른 참석자들에게 "원고 D으로부터 '별지 목록(부동산)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래대로(망인 명의로) 돌려놓으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타) 2016년 3월경 망인의 처 M의 기일에 원고 A, B, C과 AT, AU, 피고 G, H, J이 모여 같은 문제에 관하여 대화33하였는데, 이때 AT이 세법에 관하여 알아본 결과 원피고들이 합의하여 원상복구(이 사건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렸고, 다만, 법원 판결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환급되는지 여부는 알아보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자 참석자들이 세금 환급 문제에 관하여 서로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피고 G, H은 피고 J에게 '세금 환급이 되지 않는 점에 관하여 책임을 지라'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피고 J의 잘못을 지적하였고, 피고 J도 이에 반발하며 자신은 증여세 약 4,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인 데 반하여 피고 G, H이야말로 증여세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피고 G는 자신이 알아본 바로는 법원 판결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면 취득세는 아니더라도 증여세는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처리하자고 주장하였고, 참석자들은 증여세 환급 여부에 관하여 세무사 등을 통해 제대로 알아본 후 다시 의논하기로 하였다.

파) 망인이 사망하기 약 3개월 전인 2016년 6월 중순경 화성시에 있는 피고 G 집에서 원고 A, B, C과 AT, AU, 피고 G, H, J이 같은 문제에 관하여 대화34하였다. 이때 AT과 피고 J이 증여세 환급 문제에 관하여 더 알아본 결과를 알렸는데, 그 내용은 증여 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든, 법원 판결에 의해서든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이를 망인에 대한 재증여로 보아 망인에 대하여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뿐 이미 납부한 피고들의 증여세가 환급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편, 이때 피고 J은 소송 문제에 관하여 말하던 중 "우리는 '원래 원칙대로 했던 거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싸움이 되는 건데, 어차피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러면 '할아버지가 치매가 있고 정신이 없으셨는데 그렇게 해서 한 거니까 무효를 시키겠다'라고 그렇게 합의를

봤으니까"라고 말하여 망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판단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① 망인은 2006년경 교통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이후 무렵부터 구음장애, 방향감각 상실 등의 증상을 겪는 등 인지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증여가 있기 전인 2011. 9. 16. 실시된 GDS 검사에서 경미한 인지장애를 의미하는 3단계에 해당하는 검사결과가 나왔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 후 실시된 같은 검사에서는 중증의 인지장애 중 초기에 해당하는 5단계의 검사결과가 나왔으며, 그와 함께 이루어진 CDR 검사, K-MMSE 검사, Barthel ADL 검사, I-ADL 검사, CGA-NPI 검사에서도 망인의 인지능력이 현저히 감퇴한 상태라는 결과가 나온 점, ③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망인이 최근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딸 집에서 1주일을 지내고도 화장실을 찾지 못하며, 외출했다가 집을 찾아오지 못한 사례가 기록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각 증여가 이루어질 당시 망인은 만 88세의 고령이었고, 위와 같은 치매 진단 검사 당시에도 87세로 혼자서는 보행이 불가능하고 하루에 15시간 이상 잠을 자야 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능력이 매우 쇠약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증여가 있었던 2012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망인이 의사능력, 즉,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시종일관 전적으로 상실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특정 시간이나 상황에서 또는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사안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 그러한 능력을 상실할만한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서 드러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고령으로 전반적인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치매 증상도 악화되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별지 목록(부동산)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망 F, 피고 H, I, J, K에게,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J에게 증여하고,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행위의 법률적인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 즉,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와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의사표시는 망인이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하거나 행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올라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고 G, H, J, K은 원고 A, B, C 및 AU, AT과 여러 차례 만나 이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시종일관 망인이 치매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 J이 주도하여 별지 목록(부동산)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망 F, 피고 H, I, J, K 앞으로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그와 같은 위 원고들의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원고들 앞으로 위 각 부동산 중 일부분 또는 일부 지분을 이전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② 대화 당시 원고 A, B, C 및 그 배우자들(AU, AT)의 앞서 본 발언 내용과 태도가 피고들을 일방적으로 추궁하거나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그 해결책을 요구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 피고 G, H은 증여세 환급 가능 여부 때문에 임의 이행으로 자신들의 일부 지분을 말소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피고 J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다'³⁵거나 '별지 목록(부동산) 제4, 5항 부동산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원고들과의 대화에서 자신들의 입장과 견해를 분명하게 밝힌 점, 피고 G의 경우 대화 당시 모인 친족들 중 가장 윗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G, H, J, K이 원고 A, B, C 등의 기세에 눌리거나 그들의 회유에 의해 진의와 다르게 망인에게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피고 G는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주장한 점, AT과 피고 J이 위와 같은 소송을 전제로 하여 세무사 등을 통해 증여세 환급 여부를 알아본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이 법률적·의학적으로 전문적인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망인의 의사능력 유무에 관한 기준을 혼동하여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있었음에도 없었던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피고 J, G가, 망인이 의사능력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증여를 받았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있어 보이지 않음에도, 망인이 생존해 있는 약 9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시종일관 망인에게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였다.

③ 원고 A, B, C과 피고 G, H, J, K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부동산)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부분 또는 지분을 증여하거나, 피고들이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받을 것을 전제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망인의 소유명의를 회복시키거나, 망인이 소유하던 다른 상속 부동산들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는 방안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는데, 그중 세 번째 방안은 협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원고 D, E 측의 반대 때문에 여의치 않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안은 증여세 환급이 불가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망인이 보유하던 별지 목록(부동산)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만을 자녀와 손자녀들 중에서 망 O의 자녀인 피고 J, K와 망 F의 자녀인 H, I, 그리고 당시 생존해 있던 망 F 5명에게만 1/5 지분씩 이전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게다가 위 각 부동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제2항 기재 임야인데, 이는 선산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에 망인이 딸인 원고 A, B, C에게 그중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를 일부 자손들에게만 증여할 이유가 더더욱 없어 보인다. 또 망인이 생전에 자신의 부동산을 정리하여 자손들에게 나누어줄 생각이었다면 원고들과 망 N의 상속인들을 배제한 채 이를 분배할 이유가 없고, 별지 목록(부동산) 제6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은 분배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둘 이유도 없었다. 오히려 피고 G, H이 "피고 J으로부터 '별지 목록(부동산)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3:2로 나누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증여 상대방과 비율을 망인이 아니라 피고 J이 주도하여 피고들이 정한 것으로 보인다.

⑤ 별지 목록(부동산)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J에게만 증여할 동기나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J은, 이 부동산은 망 O이 젊은 나이에 사망한 것을 안타깝게 여긴 망인이 망 O의 배우자인 Q와 공동으로 매수한 후 망 O의 아들인 피고 J 앞으로 이전등기할 생각이었는데, 당시 피고 J이 미성년이었으므로 일단 망인 앞으로 등기해 두었다가 피고 J이 성년이 되면 피고 J에게 이전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올라 제1호증의 1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 4, 5,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은 망 O이 사망한 지 약 4개월 후인 1989. 7. 5. 그 배우자인 Q이 매수하였다가 재혼을 하면서 1996. 4. 16.경 망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리고 피고 J이 미성년일 때라도 피고 J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 J이 성년이 된 후로도 상당 기간 피고 J 앞으로 이전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피고 J의 주장은 선뜻 믿기가 어렵다.

⑥ 피고 G, H은 피고 J이 이 사건 각 증여를 주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J도 이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 J이 이 사건 각 증여를 주도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 J은 망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위 각 부동산을 위 5명의 자손에게만 증여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상세한 주장이나 진술이 없다.

⑦ 피고 J은 위와 같이 원고 A, B, C 등과 대화하면서 '근데 저도 뭐 말 그대로 뭐 할아버지가 옛날에 뭐 J이 너한테 뭐 주니 이런 얘기 해도, 저는 그런 거 솔직히 생각해본 적도 없고', '제가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됐을 때도 좀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지만, 저는 솔직히 제일 크게 생각했던 건 그냥 딱 하나 이 집36)이었어요. 이거는 우리 아빠 몫으로 왔던 집이니까 이것만큼은 확실히 내가 받아야 된다는 생각만 있었지, 그 외적으로는 저도 뭐 똑같이 1/637)이지', '그래서 어쨌든 저 집은 챙겨놔야지 이 생각은 솔직히 많았고, 그 외에는 솔직히 말해서 할아버지 재산이 어찌고 이런 것도 잘 모르고'라고 말한 사실38)이 있는데, 이는 별지 목록(부동산)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증여가 망인의 하자 없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한 것은 아니고, 과거에 망인이 이를 자신에게 줄 뜻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증여가 망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진정한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1) 관련 법리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상속인들의 상속분 계산

기초사실에 의하면 ① 망인의 상속인 6명이 균등하게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므로 원고 A, B, C과 망 N, 망 F, 망 O의 상속분은 각 1/6이고, ② 망 N의 상속분은 대습상속인인 원고 D, E 및 P, W, X이 공동으로 상속하되 P의 경우 배우자로서 1/2을 가산하고 나머지 대습상속인들의 상속분은 균등하므로 P의 상속분은 1/2239) 원고 D, E 및 W, X의 상속분은 각 1/3340)이며, ③ 망 F의 상속분은 그의 상속인인 피고 G, H, I이 공동으로 상속하되 피고 G의 경우 배우자로서 1/2을 가산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균등하므로 피고 G의 상속분은 1/1441) 피고 H, I의 상속분은 각 1/2142)이고, ④ 망 O의 상속분은 대습상속인인 피고 J, K이 공동으로 상속하되 그 상속분은

균등하므로 피고 J, K의 상속분은 각 1/1243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별지 목록(부동산)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들의 의무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H, I, J, K은 원고들과 P, W, X에게 아래 표 '이전할 지분'란 기재 각 지분44)

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H	2/5 (망 F이 증여받은 지분 포함)	A	1/6	1/15
B	1/6	1/15		
C	1/6	1/15		
P	1/22	1/55		
D	1/33	2/165		
E	1/33	2/165		
W	1/33	2/165		
X	1/33	2/165		
JKI	1/5	A	1/6	1/30
B	1/6	1/30		
C	1/6	1/30		
P	1/22	1/110		
D	1/33	1/165		
E	1/33	1/165		
W	1/33	1/165		
X	1/33	1/165		

다) 별지 목록(부동산)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J의 의무

그리고 마찬가지로, 피고 J은 원고들과 P, W, X에게 별지 목록(부동산)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 즉, 원고 A, B, C에게는 각 1/6 지분, P에게는 1/22 지분, 원고 D, E 및 W, X에게는 각 1/3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942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P, W, X의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내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고 H, I, J, K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다.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H, I, J, K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증거가 유효할 경우 이로 말미암아 피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G에 대한 판단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630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G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취하되었으므로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피고 H, I, J, K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한하여 그 판단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형태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 H, I, J, K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망인의 피고 H, I, J, K에 대한 이 사건 각 증거가 무효라고 판단되는 이상, 그것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유류분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다. 피고 H, I, J, K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이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청구가 모두 인정되는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H, I, J, K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취하된 상속지분 확인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박재우

판사임일혁

판사오현규

별지

- 1)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 2) 피고 G에 대하여는 주위적 청구가 모두 취하되어 다른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청구만 남게 되었다.
- 3)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 4) ◎ 원고들은 제1심에서 여러 차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H, I, J, K에 대하여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피고들에 대하여 상속지분 확인청구를, 제1,

제2, 제3 예비적으로 각각 피고들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와 상속지분 확인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들에 대한 상속지분 확인청구를 취하하고, 피고 H, I, J, K에 대한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하였고, 원고 A, B, C은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지급청구를 추가하였다. ◎ 원고들은 또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서도 여러 차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제1, 제2, 제3 예비적 청구를 하나의 예비적 청구로 통합하면서 피고들에 대한 상속지분 확인청구를 취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의 청구금액을 변경하였고, 원고 A, B, C은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지급청구를 추가하였다. ◎ 그런데, 원고 A, B, C은 최종적으로 2022. 12. 15.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하였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지급청구(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위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는 예비적 청구취지의 청구금액에 유류분 반환청구의 청구금액과 구상금 지급청구의 청구금액을 합산한 금액(별지 '금전청구내역'의 원고 및 피고별 '합계'란 기재 금액)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 주위적 청구 중 구상금 지급청구만 취하하고, 예비적 청구 중 구상금 지급청구는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각 구상금 지급청구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모두 동일한 것으로 하나의 청구일 따름인데, 2022. 6.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를 추가하면서 임의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부분에 각각 청구를 추가하였던 것이므로, 원고 A, B, C이 2022. 12. 15.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로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지급청구를 취하하면서 유류분 반환청구와 합산하여 기재했던 예비적 청구취지의 청구금액을 착오로 수정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항소 이후 여러 차례 청구취지가 변경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2021. 9. 16.자 항소장의 항소취지를 자구만 수정하여 그대로 기재한다.

6) 이하 '망인'이라 한다.

7) 망인의 배우자 M는 망인에 앞서 2004. 2. 11.에 사망하였고, 망인에게 다른 상속인 내지 자녀는 없다.

8) 이하 본문 기재 각 증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

9) 이하 같다.

10) Global Deterioration Scale, 전반적 퇴화척도. 전반적인 인지장애를 평가한다. 1단계(인지장애

없음, 임상적으로 정상), 2단계(매우 경미한 인지장애, 건망증의 시기), 3단계(경미한 인지장애, 분명한 장애를 보이는 가장 초기 단계), 4단계(중등도 인지장애, 후기 혼동의 시기), 5단계(초기 중증의 인지장애, 초기 치매), 6단계(중증의 인지장애, 중기 치매), 7단계(후기 중증의 인지장애, 말기 치매)로 구분된다. 그중 3단계의 상태는 '그러나 숙련된 임상가의 자세한 면담에 의해서만 객관적인 기억장애가 드러남. 새로이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음. 책을 읽어도 예전에 비하여 기억하는 내용이 적을 수 있음. 단어나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 것을 주위에서 알아차리기도 함. 귀중품을 엉뚱한 곳에 두거나 잃어버린 적이 있을 수 있음. 낯선 곳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을 수 있음. 임상 검사에서는 집중력의 감퇴가 보일 수 있음. 직업이나 사회 생활에서 수행 능력이 감퇴함. 동료가 환자의 일 수행 능력이 떨어짐을 느낌. 환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할 수 있음. 경하거나 중증도의 불안증이 동반될 수 있음. 현재 상태로써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면 불안증이 증가됨.'이라고 설명되고 있다(갑 제13호증의 6, 9).

11) 갑 제13호증의 9

12) 갑 제12호증의 6

13)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orean Version, 한국판 간이정신상태 검사

14) 갑 제12호증의 8

15) 갑 제12호증의 2

16) 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 치매 척도. 0단계, 0.5단계, 1단계~5단계로 구분하며, 숫자가 커질수록 치매 정도가 심하다.

17) 5단계의 상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지낼 수 없음. 자신의 현재 일상 생활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들을 기억하지 못함(예를 들면, 집 주소나 전화번호, 손자와 같은 가까운 친지의 이름 또는 자신이 졸업한 학교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움). 시간(날짜, 요일, 계절 등)이나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자주 상실됨. 교육을 받은 사람이 40에서 4씩 또는 20에서 2씩 거꾸로 빼나가는 것을 하지 못하기도 함. 이 단계의 환자들은 대개 자신이나 타인에 관한 주요한 정보는 간직하고 있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고 대개 배우자와 자녀의 이름도 알고 있음. 화장실 사용이나 식사에 도움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적절한 옷을 선택하거나 옷을 입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예를 들면 신을 좌우 바꾸어

신음)'이라고 설명되고 있다(갑 제13호증의 6, 9).

18) Barthel Activities of Daily Living, 바텔 일상생활 지수. 식사, 대소변 조절, 이동, 개인위생, 옷 입기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

19)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한다.

20) Caregiver-Administered Neuropsychiatric Inventory, 보호자 설문 신경정신행동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이상행동이 심한 것으로 평가한다.

21) 대면 명명 능력

22) bilateral temporal frontal lobes: 양측 측두전두엽

23) bilateral parietal lobes: 양측 두정엽

24) 갑 제12호증의 2

25) 갑 제12호증의 4

26) 갑 제12호증의 10

27) 갑 제21호증 녹취록

28) 갑 제21호증 녹취록

29) 갑 제8호증

30) 별지 목록(부동산)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31) 망 F

32) 갑 제22호증

33) 갑 제23호증 녹취록

34) 갑 제24호증 녹취록

35) 갑 제20호증 녹취록 7쪽

36) 별지 목록(부동산)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

37) 망인의 자녀 6명을 기준으로 피고 J, K이 전체의 1/6 지분을 갖는다는 의미

38) 갑 제20호증 녹취록 17쪽

39) 계산식: $1/6 \times 1.5/5.5$

40) 계산식: $1/6 \times 1/5.5$

41) 계산식: $1/6 \times 1.5/3.5$